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인등이 범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재판권의 민간 이관〉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14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군인등이 범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재판권의 민간 이관	2

I. 제안경위

1. 제출자 : 서영교의원 등 11
2. 발의일 : 2024. 10. 31.
3. 회부일 : 2024. 11.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군인 가족은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이 같은 부대 군인으로 군인 가족 안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승진이나 주변을 의식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사법원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군인등이 범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재판권의 민간 이관

□ 개정안은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대상에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¹⁾(이하 “군인 등”이라 함)이 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²⁾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u><신 설></u>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 <u>군형법</u> 」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 1)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현행	개정안
2.·3. (생략) ③ ~ ⑥ (생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학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대한민국헌법」 제110조³⁾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⁴⁾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2022. 7. 1. 이전의 「군사법원법」 당초 군인등이 신분취득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군사법원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은 군인등이 범한 성폭력범죄, 군인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등의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의 재판 및 수사관할이 각각 민간법원과 민간 수사기관(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으로 이관하고,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항소심에 대한 재판권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였음⁵⁾⁶⁾.

3) 「대한민국헌법」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군사법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군인등에 대한 형사절차 이원화 >

	구분	수사	1심	2심	3심
기존	모든 범죄	군사경찰 군검찰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대법원
개정	모든 범죄 (민간이관범죄 제외)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민간이관범죄 ① 성폭력범죄 ② 사망원인범죄 ③ 입대 전 범죄	민간 수사기관 (경찰, 검찰)	지방법원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합의부)	

자료: 국방부

□ 개정안은 군인등이 범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의 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 대상 범죄인 ‘군인등이 범한 아동학대범죄’는 친권자 등 “보호자”⁷⁾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6) 「형법」 제2장제5절 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에 해당하는 군인등이 18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행한 “아동학대”⁸⁾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또는 「아동복지법」⁹⁾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 매매, 성적 학대,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를 통하여 아동을 살해하거나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인데,

- 이미 군인등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한 성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민간 법원이 가지므로¹⁰⁾, 개정안에 따른 경우 군인등이 범한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9)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제10호 및 제11호 생략)

아동학대범죄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민간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임.

○ ‘군인등이 범한 아동학대범죄’는 가해자가 보호자인 군인등이고, 피해자가 민간인 아동인 비군사범죄로서,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며,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며¹¹⁾,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세심한 보호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음.

○ 특히 군인인 부에게 10년간 아동학대를 당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군검찰이 피해 아동을 회유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¹²⁾하여, “군가족 아동학대 사건의 민간 이관”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¹³⁾이

10)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유

12) MBN, 「군인 아빠가 자녀들 상습 폭행…회유 의혹에 군 검찰 “법에 따라 처리”」, 2023. 01. 13.

13) 「군가족 아동학대 사건의 민간 이관에 관한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3.1.16.-202.2.15. 청원종료일: 2023.2.16.

제출된 바 있고, 군사경찰 및 육해공군 검찰단에는 아동학대 및 폭력을 전담하는 기구와 인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인 조사와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러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와 가해자 조치를 동시에 진행·연계하고,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특례 및 보호절차 규정과 가해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음¹⁴⁾.

- 즉,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피고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나, 보호처분¹⁵⁾ 대상이 되는 아동보호사건¹⁶⁾의 경우 검사 및 법원이 가정법원¹⁷⁾에 송치¹⁸⁾하여 가정법

청원결과: 동의만료폐기 동의수: 1,691명

청원의 취지: 군인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사건을 군 경찰과 군 검찰에서 진행하는 것이 불공평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민간에서 할 수 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14) 정웅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및 향후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2권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4

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

원의 관할로 처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등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직권 등으로 임시조치¹⁹⁾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군인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군인등”이 범한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군사

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29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법원에서 법원으로 이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군 사법제도의 운영상 핵심과제가 “국민 일반에게 보장되는 평등한 법적 보호를,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인에 대한 관계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것인가”²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 범죄의 특성과 함께 다음과 같은 두가지 관점²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먼저, 개정안과 같이 군인등이 범한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찬성하는 견해로는, ①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의 재판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군 지휘관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의 군사법원 제도 하에서는 군사재판의 권위와 사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② 군의 특수한 사정은 증거조사, 의견제출 등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고,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과, ③ 최근 군 형사사건의 상당수가 교통사고, 성범죄 등 군의 특수성과는 무관한 것이며 이와 같은 비순정군사범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일반 법원에 비해 그 양형의 균형감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다음으로, 개정안과 같이 군인등이 범한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법원

20)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결정

21) 제38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1.6.10.)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 회의록, pp. 56~61

으로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전쟁 발생 시 신속한 재판을 통한 안정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시에도 군사법원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② 증인 및 감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군사기밀 등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③ 군의 기밀성, 조직 등 군의 특수성을 경험 및 이해하는 군판사가 군사법원에서 군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국방부는 군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일반 법원으로 이관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군에서 수사·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적시적 인사처리 등 가해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통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군에서도 아동보호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 군검사가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 군과 관련한 중한 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군 수사기관이 수사 중 아동학대범죄 신고로 아동학대 범죄가 인지된 경우 모두 민간으로 이관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민간법원으로 재판권을 이관하는 것에는 신중 검토가 필요

하다는 의견임.

- **법무부**는 군인의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군인에 대한 재판권을 특별법원이 군사법원에 전속시키고자 하는 「군사법원법」의 입법취지, 군인등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 발생 건수 및 추이, 피해 아동에 대한 군사법원의 보호·지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명시적인 준용 규정은 없으나 군사법원 실무 및 판례상 군인등의 아동학대범죄도 아동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군사법원에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등 보호조치가 가능한 점,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인권보장 및 사법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2022. 7.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인등이 범한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으로 재판권이 이관되었는바 그 시행 경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이관 대상 범죄 추가 확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변호사협회**는 군인등이 범한 아동학대범죄는 가해자가 보호자인 군인등인 반면 피해자는 군인이 아닌 아동인 경우가 대부분인 비군사범죄로서 「군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군 내부에 아동학대범죄 전담기구와 인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실

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1